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상인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정부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 등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호 신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개별가맹점의 경우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에 대한 환전(대행)한도 부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4).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사용 방지를 위하여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비함.(안 제26조의5 및 제26조의11 신설).

- 개별가맹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의 거래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환전할 수 없도록 하고, 제3자와의 공모 등을 통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사용·유통할 수 없도록 함.
-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의 온누리상품권 재판매, 등록 가맹점 외에서의 사용 등을 금지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가맹점 등에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하고, 소속 공무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12 신설).
-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정비함(안 제26조의6, 제26조의9 신설, 제72조, 및 제74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그 3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Ⅱ. 검토의견

- 벌칙과 과태료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